[별지 제1호서식]

#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1. 기본정보 | 사업명 | 2027년 재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| |
| | 영향평가단계 | ☐ 예산편성 ☑ 사업발주<br>☐ 그 외 필요시 ☐ 재평가 | |
| | 주요 내용 | (대표 홈페이지)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실예방을 위한 대국민 콘텐츠 제공 등<br>(자살예방교육 시스템)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 자살예방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강사 양성 등<br>(데이터쥼 시스템) 대국민 및 연구진 대상 자살예방 국가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 등<br>(스페디스 시스템)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실적 관리 시스템 | |
| | 사업기간<br>(또는 개발기간) | 2027년 1월 ~ 2027년 12월 | |
| | 구분 |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·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| ☐ |
| | | ② 국가안보, 치안,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| ☐ |
| | |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| ☐ |
| | | ④ 단일기관 내부(소속기관 제외)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| ☐ |
| | |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| ☐ |
| | |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| ☑ |
| | |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| ☐ |
| | | ※ 구분 ①~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,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| |
| 2. 운영계획 | 운영기관 | ☑ 단일 기관<br>☐ 다수 기관 (예상 : 개 기관) | |
| | 사용자<br>(복수선택 가능) | 구분 | 예상 사용자수 |
| | | ☑ 내부 직원 | 70명 |
| | | ☑ 타 기관 직원 | 2,000명 |
| | | ☑ 일반 국민 또는 기업 | 860,000명 |
| 3.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| 주요기능과 동일·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<br>☐ 있음 ☐ 없음 | | |
| | ※「없음」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| | |
| | 주요 기능 | 동일·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| |
| | ○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ㅇ | |
| | ∙<br>∙ | ∙<br>∙ |
| **4. 사업의 필요성·공공성 검토**<br>(복수선택 가능) | ☐ 법령에 규정된 사업<br>(관련 법령 : )<br>☐ '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' 준수<br>☐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*<br>*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,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·활용 계획,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,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<br>(기여 방안 : )<br>☐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<br>(부적합 사유 : ) | |
| **5. 종합의견** | ☑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| |
| | 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<br>(추진 방안 : ) | |

2026년 10월 26일

기관명 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(직인)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# [√]기술적용계획표, [ ]기술적용결과표

| 사업명 | 2027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|
|---|---|
| 작성일 | 2026. 10. 26. |

## ◇ 법률 및 고시 등

| 구분 | 항 목 |
|---|---|
| 법률 | o 지능정보화 기본법<br>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br>o 개인정보 보호법<br>o 소프트웨어 진흥법<br>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<br>o 전자서명법<br>o 전자정부법<br>o 국가정보원법<br>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<br>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<br>o 통신비밀보호법<br>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<br>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<br>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<br>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br>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|
| 고시 등 | o 보안업무규정(대통령령)<br>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<br>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(국무총리훈령)<br>o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(행정안전부고시)<br>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(미래창조과학부고시)<br>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고시)<br>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(행정안전부고시)<br>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(행정안전부예규)<br>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(행정안전부고시)<br>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(행정안전부고시)<br>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)<br>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·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(행정안전부예규)<br>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예규)<br>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) |

| 구분 | 항 목 |
|---|---|
| |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(산업통상자원부고시)<br>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(기획재정부계약예규)<br>o (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기획재정부계약예규)<br>o (계약예규)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기획재정부계약예규)<br>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(공정거래위원회예규)<br>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<br>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)<br>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(행정안전부예규)<br>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(행정안전부고시)<br>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(행정안전부고시)<br>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(행정안전부예규)<br>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(행정안전부고시)<br>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(국가정보원)<br>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(행정안전부고시)<br>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 |

## ◇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기본 지침 | | | | | | |
|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, 장애인,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·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세부 기술 지침 | | | | | | |
| 관련규정 |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<br>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2 | o | | | | |
| |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| o | | | | |
| | o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| o | | | | |
| |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/UX 가이드라인 | o | | | | |
| 외부 접근 장치 | o 웹브라우저 관련 | | | | | |
| | - HTML 4.01/HTML 5, CSS 2.1 / CSS 3 | o | | | | |
| | - XHTML 1.0 | | | | o | |
| | - XML 1.0, XSL 1.0, XSLT 2.0 | o | | | | |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| - ECMAScript 14th | | | | o | |
| | o 모바일 관련 | | | | | |
| | -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.0 (KICS.KO-10.0307) | o | | | | 스페디스 시스템은 제외 |
| | -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 (KSX3253:2016) | o | | | | 스페디스 시스템은 제외 |
| 서비스 요구사항 | 서비스관리(KS X ISO/IEC 20000)/ ITIL v3, v4 | | | | o | |
|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| IPv4 | o | | | | |
| | IPv6 | | | | o | |

## ◇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기본 지침 | | | | | | |
|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,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·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| | | | | o | |
| 세부 기술 지침 | | | | | | |
| 서비스 통합 | o 웹 서비스 | | | | | |
| | - SOAP 1.2, WSDL 2.0, XML 1.0 | | | | o | |
| | - RESTful | | | | o | |
| |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| | | | | |
| | - UML 2.X / BPMN 2.X | | | | o | |
| | - ebXML/BPEL/XPDL | | | | o | |
| 데이터 공유 | o 데이터 형식: XML 1.0, JSON | o | | | | |
| 인터페이스 |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: RESTful API, WSDL 2.0 | | | | o | |

## ◇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기본 지침 | | | | | | |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,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 | | o | | | | 스페디스 시스템만 해당 |
| 세부 기술 지침 | | | | | | |
| 네트워크 |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: H.320~H.324, H.310 | | | | o | |
| | o 부가통신: VoIP | | | | | |
| | - H.323 | | | | o | |
| | - SIP | | | | o | |
| | - Megaco(H.248) | | | | o | |
|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| o 서버용(개방형)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| | | | | |
| | - POSIX.0 | | | | o | |
| | - UNIX | | | | o | |
| | - Windows Server | | | | o | |
| | - Linux | o | | | | |
| |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| | | | | |
| | - android | | | | o | |
| | - IOS | | | | o | |
| 데이터베이스 | o DBMS | | | | | |
| | - RDBMS | o | | | | |
| | - ORDBMS | | | | o | |
| | - OODBMS | | | | o | |
| | - MMDBMS | | | | o | |
| | - TSDBMS | | | | o | |
| 시스템 관리 | o ITIL v3, v4 / ISO20000 | | | | o | |
| 소프트웨어 공학 | o 개발프레임워크: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| o | | | | |
| 클라우드 컴퓨팅 | o IaaS | o | | | | |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| o PaaS | | | | o | |
| | o SaaS | | | | o | |

## ◇ 요소기술 분야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 적용 | 미적용 | 해당 없음 | |
| 기본 지침 | | | | | | |
|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 | o | | | | |
|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, 데이터 교환, 공공데이터 제공, 데이터 품질 향상,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)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·설계,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「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」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세부 기술 지침 | | | | | | |
| 관련규정 |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<br>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<br>o 공공데이터 제공·관리 매뉴얼 | o | | | | |
| 데이터 표현 | o 정적표현: HTML 4.01 / HTML 5 | o | | | | |
| | o 동적표현 | | | | | |
| | - JSP 2.x | o | | | | |
| | - ASP.net | | | | o | |
| | - PHP | | | | o | |
| | - 기타 ( ) | | | | o | |
| 프로그래밍 | o 프로그래밍 | | | | | |
| | - C | | | | o | |
| | - C++ | | | | o | |
| | - Java | o | | | | |
| | - C# | | | | o | |
| | - 기타 ( ) | | | | o | |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데이터 교환 | o 교환프로토콜 | | | | | |
| | - XMI 2.0 / XMI 3.2 | o | | | | 스페디스 시스템만 해당 |
| | - SOAP 1.2 | o | | | | 스페디스 시스템만 해당 |
| | - API | o | | | | 스페디스 시스템만 해당 |
| | o 문자셋 | | | | | |
| | - EUC-KR | | | | o | |
| | - UTF-8(단, 신규시스템은 UTF-8 우선 적용) | o | | | | |

## ◇ 보안 분야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기본 지침 | | | | | | |
|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“서비스 접근 및 전달”, “플랫폼 및 기반구조”, “요소기술” 및 “인터페이스 및 통합”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 | | | | | o | |
|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・조치하여야 한다. | | o | | | | |
| 세부 기술 지침 | | | | | | |
| 관련 규정 | o 전자정부법 | o | | | | |
| |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(국가정보원) | o | | | | |
| |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・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(조달청 지침) | | | | o | |
|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|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・사용 대상(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) | | | | | |
| | - PKI제품 | o | | | | |
| | - SSO제품(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) | | | | o | |
| | - 디스크・파일 암호화 제품 | | | | o | |
| | - 문서 암호화 제품(DRM)(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) | | | | o | |
| | - 메일 암호화 제품 | | | | o | |
| | - 구간 암호화 제품 | o | | | | |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없음 | |
| | - 하드웨어 보안 토큰 | | | | o | |
| | - DB암호화 제품(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) | o | | | | |
| | - 상기제품(8종)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| | | | o | |
| | -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| | | | o | |
| |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(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) | | | | | |
| | - (네트워크)침입차단 | | | | o | |
| | - (네트워크)침입방지(침입탐지 포함) | o | | | | |
| | - 통합보안관리(통합로그관리 포함) | | | | o | |
| | -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| | | | o | |
| | - DDos 대응(성능평가로 도입 가능) | | | | o | |
| | - 인터넷 전화 보안 | | | | o | |
| | - 무선침입방지 | | | | o | |
| | - 무선랜 인증 | | | | o | |
| | - 가상사설망(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) | | | | o | |
| | - 네트워크 접근통제 | o | | | | |
| | - 망간 자료전송(2022.1 이전 인증제품) | | | | o | |
| | - 안티 바이러스(성능평가로 도입 가능) | o | | | | |
| | - 패치관리 | | | | o | |
| | - 스팸메일 차단 | | | | o | |
| | - 서버 접근통제 | o | | | | |
| | - DB접근 통제 | o | | | | |
| | - 스마트카드 | | | | o | |
| | - 디지털 복합기 (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) | | | | o | |
| | -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(성능평가로 도입 가능) | | | | o | |
| | - 스마트폰 보안관리 | | | | o | |
| | -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(2020.1.1이전 인증제품,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) | | | | o | |
| | -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(2021.1.1이전 인증제품, 매체제어 제품 포함,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) | | | | o | |
| | -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(2021.1.1 이전 인증제품) | | | | o | |

| 구 분 | 항 목 | 적용계획/결과 | | | | 부분적용/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| 부분적용 | 미적용 | 해당 없음 | |
| | -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| | | | o | |
| |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| | | | | |
| | -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(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) | | | | o | |
| | -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(매체제어제품 포함,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) | | | | o | |
| | - 망간 자료전송 | | | | o | |
| | -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| | | | o | |
| | - 네트워크 장비(L3 스위치 이상) | | | | o | |
| | - 가상화관리제품 | | | | o | |
| | o 모바일 서비스(앱·웹) 등 | | | | | |
| | -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·조치 (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) | o | | | | |
| | - 국가·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| o | | | | |
| |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| | | | | |
| | -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(CSAP)을 받은 서비스 | o | | | | |
| | - 국가·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| o | | | | |
|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| o 보안기능 준수 | | | | | |
| | - 식별 및 인증 | o | | | | |
| | - 암호지원 | o | | | | |
| | - 정보 흐름 통제 | o | | | | |
| | - 보안 관리 | o | | | | |
| | - 자체 시험 | o | | | | |
| | - 접근 통제 | o | | | | |
| | - 전송데이터 보호 | o | | | | |
| | - 감사 기록 | o | | | | |
| | -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| o | | | | |
| |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| | | | | |
| | -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| o | | | | |
| | - 취약점 개선(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) | o | | | | |
| | - 백도어 제거(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) | o | | | | |
| | -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| o | | | | |